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53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7. 7) 상정

○ 제153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7. 7) 수정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조재형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부과·징수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납세편의시책에 관한 정의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보상점수 부여 적용 대상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 적용함.(안 제3조)
- 보상점수 부여기준·항목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4조)
- 보상점수는 제한없이 적립하며, 보상점수 최종 누적 후 그로부터 3년간 신규 누적이 없는 경우 그동안의 보상점수는 소멸함.(안 제5조)
- 보상금의 지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, 누적점수 5천점 이상부터 지급함.(안 제6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제5조 누적한도 소멸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은?</p> <p>○ 소멸 대상 누적점수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방안은 없는지?</p>	<p>○ 누적점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부서 입장에서는 행·재정적 부담이 우려 될 수 있음.</p> <p>○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나 납세자들에게 수혜적인 측면의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절차 수행 등의 또 다른 업무의 부담 소지가 될 수 있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

○ 납세자 보상점수 소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활용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가 됨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428호
의결 년월일	2009. 7. 10. (제153회)

제안년월일 : 2009. 7. 7.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에 참여하는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으로 보상점수 소멸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여 성실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며,
- ‘보상점수 부여 납세자’를 ‘보상점수 적립중인 납세자’로 수정토록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보상점수 소멸기준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조정함(안 제5조 제3항)
-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보상점수 적립중인 납세자로 수정함.
(안 제7조)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 제3항중 “3년간” 을 “5년간” 으로 수정한다.

제7조중 “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” 를 “보상점수 적립중인 납세자” 로 수정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「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
같음」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 5조 (누적한도와 소멸기준)①-② (생략)</p> <p>③ 보상점수 최종 누적 후 그로부터 <u>3년간</u> 신규 누적이 없는 경우 그동안 의 보상 점수는 소멸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 5조 (누적한도와 소멸기준)①-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5년간</u> ----- -----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에 참여하여 성실한 납부를 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 부과·징수 비용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납세편의시책”이란 납세자가 자동이체납부, 인터넷납부, 텔레뱅킹납부, 가상계좌납부, 지방세인터넷신고납부, 전자송달 신청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시책을 말한다.
- ② “보상점수”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게 보상점수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.
- ③ “보상금”이란 보상점수를 납세자별로 누적 관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100점당 100원의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징수의무(신고·납부분 주민세, 사업소세)자는 제외한다.

제4조(보상점수 부여) ①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의 보상점수 부여기준 및 항목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② 시장은 보상점수 부여기준 항목에 따른 신고·신청 또는

- 수납이 확인된 후 10일 이내에 보상점수를 부여하여 누적 적립하고, 적립내역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누적한도와 소멸기준) ① 보상점수는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다.
 ② 보상금 지급분에 대하여는 보상점수에서 뺀다.
 ③ 보상점수 최종 누적 후 그로부터 5년간 신규 누적이 없는 경우 그동안의 보상점수는 소멸한다.
 ④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까지 상속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보상점수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시까지 누적된 보상점수는 자동 소멸한다.
- 제6조(보상금 지급) ① 시장은 납세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지급할 수 있다.
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.
 ③ 보상점수는 누적하여 5천점 이상이 되면 지급하되, 1천원 단위로 지급한다.
- 제7조(경품 추첨 및 지급) 보상점수 적립중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보상금 지급 제한) 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에 참여하여 성실한 납부를 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 부과·징수 비용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납세편의시책”이란 납세자가 자동이체납부, 인터넷납부, 텔레뱅킹납부, 가상계좌납부, 지방세인터넷신고납부, 전자송달신청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시책을 말한다.
- ② “보상점수”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게 보상점수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.

③ “보상금”이란 보상점수를 납세자별로 누적 관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100점당 100원의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징수의무(신고·납부분 주민세, 사업소세)자는 제외한다.

제4조(보상점수 부여) ①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의 보상점수 부여기준 및 항목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보상점수 부여기준 항목에 따른 신고·신청 또는 수납이 확인된 후 10일 이내에 보상점수를 부여하여 누적 적립하고, 적립내역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누적한도와 소멸기준) ① 보상점수는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다.

② 보상금 지급분에 대하여는 보상점수에서 뺀다.

③ 보상점수 최종 누적 후 그로부터 5년간 신규 누적이 없는 경우 그동안의 보상점수는 소멸한다.

④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까지 상속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보상점수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시까지

누적된 보상점수는 자동 소멸한다.

제6조(보상금 지급) ① 시장은 납세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보상점수는 누적하여 5천점 이상이 되면 지급하되, 1천원 단위로 지급한다.

제7조(경품 추첨 및 지급) 보상점수 적립중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보상금 지급 제한) 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